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6
----------	-------

제출년월일 : 2022. 0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개편을 시행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재조정 등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1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른 국 명칭변경(안 제4조 ~ 제7조)

- 행정관리국 ⇒ 행정지원국
- 복지교육국 ⇒ 약자와동행국
- 관광일자리국 ⇒ 관광경제국
- 기획재정국 ⇒ 재정관리국

다. 부서 신설(안 제3조)

- 부구청장 직속 새마포담당관 신설

라. 부서 명칭변경 및 소관 국 조정(안 제4조 ~ 제9조, 제12조)

- 행정지원국
 - 총무과 ⇒ 행정지원과 (명칭변경)
 - 홍보과 ⇒ 홍보미디어과 (명칭변경)
 - 도시환경국 소속 도시안전과 ⇒ 행정지원국 소속 구민안전과 (명칭변경)
- 약자와동행국
 - 복지정책과 ⇒ 주민생활복지과 (명칭변경)
 - 노인장애인과 ⇒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부서분리 및 명칭변경)
 - 여성가족과 ⇒ 가족행복지원과 (명칭변경)
 - 아동청년과 ⇒ 아동청소년과 (명칭변경)

○ 관광경제국

- 관광과 ⇒ 관광정책과 (명칭변경)
- 지역경제과 ⇒ 경제진흥과 (명칭변경)
- 문화예술과 ⇒ 문화누리과 (명칭변경)
- 일자리지원과 ⇒ 일자리청년과 (명칭변경)
- 생활체육과 ⇒ 체육진흥과 (명칭변경)
- 복지교육국 소속 교육지원과 ⇒ 관광경제국 소속 교육정책과 (명칭변경)

○ 재정관리국

- 기획예산과 ⇒ 디지털재정과 (명칭변경)
- 세무1과 ⇒ 재산세과 (명칭변경)
- 세무2과 ⇒ 지방소득세과 (명칭변경)

○ 도시환경국

- 주택과 ⇒ 주택상생과 (명칭변경)
- 행정관리국 소속 청소행정과 ⇒ 도시환경국 소속 자원순환과 (명칭변경)
- 건축과 ⇒ 건축지원과 (명칭변경)
- 환경과 ⇒ 맑은환경과 (명칭변경)

○ 교통건설국

- 교통지도과 ⇒ 주차관리과 (명칭변경)
- 건설관리과 ⇒ 보행행정과 (명칭변경)
- 도로과 ⇒ 도로개선과 (명칭변경)
- 치수과 ⇒ 물관리과 (명칭변경)

○ 보건소 : 건강증진과 ⇒ 건강동행과 (명칭변경)

마. 한시기구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부칙 신설

-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을 조례 시행과 동시에 만료하는 것으로 하는 부칙 신설

바. 기타 국 건제순 및 분장사무 조정,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표기 조정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2. 8. 11. ~ 8. 15.(4일)

▶ 일자리지원과의 의견 제출[일자리지원과-16466(2022.8.12.)]

☞ 일자리지원과 제출의견

우리 구 청년인구의 비율이 타 자치구보다 높은 상황이며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라 청년업무가 일자리 관련 부서로 이관되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 부서 명칭을 “좋은일자리과”에서 “일자리청년과”로 변경요청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제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2.08.18.)

- 입법예고시 제출된 부서 의견 반영하여 수정 의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복지교육국”을 “행정지원국, 약자와동행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구청장 소속으로 새마포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두고, 새마포담당관은 구정 기획·조정·심사분석·의회협력·공약 사업 관리·구민소통·법제심사 및 송무 등을, 감사담당관은 감사·조사·민원관리·심사·환경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홍보과·청소행정과·민원여권과·전산정보과”를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홍보미디어과·구민안전과·민원여권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후생복지, 의회 및”을 “후생복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 민방위, 전시운영계획, 사회복지요원 관리”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뉴미디어”를 “미디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4.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 민방위, 전시운영계획, 사

회복무요원 관리,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 제7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7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약자와동행국) ① 약자와동행국에 주민생활복지과·생활보장과·어르신동행과·장애인동행과·가족행복지원과·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약자와동행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호, 사회복지 시설·법인 관리, 지역복지욕구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지역보호체계,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의료급여, 자활지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시책 추진 및 노인복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정책, 영유아 보육사업, 다문화가족·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제6조의 제목 “(관광일자리국)”을 “(관광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에 관광과·일자리지원과·문화예술과·지역경제과·생활체육과”를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화누리과·일자리청년과·체육진흥과·교육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2호) 중 “사회적경제”를 “청년지원, 사회적경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4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정책, 관광산업,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평생교육,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청소년 교육센터 운영,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재무과·징수과·세무1과·세무2과·부동산정보과”를 “재정관리국에 디지털재정과·재무과·징수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부동산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구정 기획·조정·심사분석, 예산”을 “예산”으로, “법제심사 및 송무, 통계”를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 영상정보 운영·관리”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5조)의 제목 “(기획재정국)”을 “(재정관리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도시안전과·환경과·공원녹지과”를 “주택상생과·자원순환과·도시계획과·건축지원과·맑은환경과·공원녹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도시디자인”을 “도시디자인, 건축안전”으로 한다.

2.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지도감독,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도로과·치수과”를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보행행정과·도로개선과·물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토지의 사용·수용, 보상, 전문건설업, 가로정비”를 “도로의 사용·수용·보상, 전문건설업, 가로정비, 옥외 광고물 관리”로 한다.

제10조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를 “보건행정과

· 위생과 · 건강동행과 · 의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를 “안전관리, 출산장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도서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4조의2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법 제4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본청 · 보건소 · 사업소의 담당관 · 국 · 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본청 · 보건소 · 사업소의 담당관 · 국 · 과의 소관사무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만료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6조 중 “자치행정팀장”을 “동행정팀장”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19조제1항 중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제7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뉴미디어팀장”을 “미디어채널팀장”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4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4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총무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별표2의 “행정민원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5조의2제4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자원재활용팀장”을 “재활용관리팀장”으로 한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한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 교육지원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별표1의 자연재난분야 1, 2의 “치수과”를 “물관리과”로 하고, 3의 “도로과”를 “도로개선과”로, 4, 5의 “도시환경국”을 “행정지원국”으로, 6의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하고, 별표1의 사회재난분야 1의 “도로과”를 “도로개선과”로, 2의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7의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9의 “행정관리국”을 “재정관리국”으로,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10의 “기획재정국”을 “관광경제국”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11의 “행정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13의 “기획재정국”을 “관광경제국”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14의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나. 별표2의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복지정책과”를 “주민생활복지과”로,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로,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누리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로, “도로과”를 “도로개선과”로, “치수과”를 “물관리과”로,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주택과”를 “주택상생과”로, “건설관리과”를 “보행행정과”로,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세무1과”를 “재산세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건축과”를 “건축지원과”로, “일자리지원과”를 “일자리청년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생활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정책과”로 “건강증진과”를 “건강동

행과”로 “공보담당관”을 “홍보미디어과”로, “기획예산과”를 “새마포담당관”으로, “여성가족과”를 “가족행복지원과”로, “아동청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한다.

다. 별표4의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총무과”는 “행정지원과”로, “복지행정과”는 “주민생활복지과”로,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로,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누리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로, “토목과”를 “도로개선과”로, “치수과”를 “물관리과”로,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주택과”를 “주택상생과”로, “건설관리과”를 “보행행정과”로,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세무1과”를 “재산세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건축과”를 “건축지원과”로, “일자리지원과”를 “일자리청년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생활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정책과”로, “건강증진과”를 “건강동행과”로, “공보담당관”을 “홍보미디어과”로, “기획예산과”를 “새마포담당관”으로, “여성가족과”를 “가족행복지원과”로, “아동청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교육국장”을 “행

정지원국장, 재정관리국장,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제19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7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아동청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교육지원과장 및 아동청년과장”을 “교육정책과장 및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과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정책팀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어르신동행과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정책팀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복지교육
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4조 중 “교육지
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정책과”로, 제4조 중
“교육지원팀장”을 “교육정책팀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 중 “교육지원과장”을 “아동
청소년과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재정국장과 복지교육국장”을 “재정관리국장과 약자와
동행국장”으로 한다.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4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제9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한다.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하고, 제11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한다.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교육지원팀장”을 “교육정책팀장”으로 한다.

35.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5조제8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제13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아동청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제8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여성가족과장, 교육지원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9조제4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팀장”을 “경제총괄팀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제7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을 “경제진흥과 경제총괄팀장”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

42.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4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4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관광일자리국장과 기획재정국장”을 “관광경제국장과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4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 또는 관광과장”을 “관광경제국장 또는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47.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제1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4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4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7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5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제7조제3항 중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

5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10조제4항제1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3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4호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10조제5항 중 “**도시안전과**”를 “**구민안전과**”로 한다.

5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한다.

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제9조제3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여성가족과장**”을 “**어르신동행과장·장애인동행과장·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총무과 재난안전팀장**”을 “**구민안전과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58.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제5조제4항제1호 “**기획예산과장, 도시안전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 보행행정과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59.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여성정책팀장**”을 “**양성평등정책팀장**”으로 한다.

60.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문화예술과**”를 “**문화누리과**”로 한다.

6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과**”를 “**새마포담당관**”으로,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새마포담당관**”으로, 제7조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6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제3조제2항제4호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5호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6호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6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복지행정과장**”을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6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3호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4호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6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보행행정과장**”으로, 제8조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8조제5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보행행정과장**”으로 한다.

66.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6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6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한다.

6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제7조 중 “운수관리팀장”을 “운수질서관리팀장”으로 한다.

70.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7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팀장”을 “식품행정팀장”으로, 제6조제3항제3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한다.

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조경팀장”을 “가로정원팀장”으로 한다.

7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생활체육과”을 “체육진흥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을 둔다.</p> <p>② 부구청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과 마포1번가연구단을 두고, 감사담당관은 감사·조사·민원소통·심사·환경순찰 등을, 마포1번가연구단은 소통·협치·구정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제4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 ----- 행정지원국, 약자와동행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p> <p>② 부구청장 소속으로 새마포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두고, 새마포담당관은 구정 기획·조정·심사분석·의회협력·공약사업 관리·구민소통·법제심사 및 송무 등을, 감사담당관은 감사·조사·민원관리·심사·환경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제4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p>

국에 총무과 · 자치행정과 · 홍보과 · 청소행정과 · 민원여권과 · 전산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 구청사 관리, 인사 · 조직,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선거, 주민등록, 동행정, 동청사 관리, 행정구역 조정,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단체 지원, 민방위, 전시운영 계획,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구정홍보, 언론보도, 뉴미디어에 관한 사항
4.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지도감독,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설치 ·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략)
6.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 영상정보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국에 행정지원과 · 자치행정과 · 홍보미디어과 · 구민안전과 · 민원여권과-----.

② 행정지원국장-----.

1. -----
----- 후생복지, -----

 2. -----

----- 지원-----

 3. ----- 미디어-----

 4. 안전정책 총괄 · 조정,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 민방위, 전시운영계획, 사회복무요원 관리,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 <삭 제>

제5조(약자와동행국) ① 약자와

동행국에 주민생활복지과 · 생활보장과 · 어르신동행과 · 장애인동행과 · 가족행복지원과 ·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약자와동행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호, 사회복지시설 · 법인 관리, 지역복지욕구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지역보호체계,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의료급여, 자활지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시책 추진 및 노인복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정책, 영유아 보육사업, 다문화가족 ·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 청소년 지원에 관

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재무과·징수과·세무1과·세무2과·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기획·조정·심사분석, 예산 편성·배정·교부, 투자심사 및 재정계획 수립, 지방공기업, 법제심사 및 송무, 통계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제6조(관광일자리국) ① 관광일자리국에 관광과·일자리지원과·문화예술과·지역경제과·생활체육과를 둔다.

② 관광일자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기획, 관광사업,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지원,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

한 사항

7. 삭제

제7조(재정관리국) ① 재정관리국에 디지털재정과·재무과·징수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부동산정보과

② 재정관리국장

1. 예산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 영상정보 운영·관리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관광경제국)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화누리과·일자리청년과·체육진흥과·교육정책과

② 관광경제국장

1. 관광정책, 관광산업,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청년 지원, 사회적경제

항

3. (생략)

4.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생활경제 및 물가안정 관리,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진흥, 체육시설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제7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아동청년과·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호, 사회복지시설·법인 관리, 지역복지육구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지역보호체

3. (현행과 같음)

2. -----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

5. ----- 생활체육시설 -----

6.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평생교육,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청소년교육센터 운영,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삭제>

계,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의료급여, 자활지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 영유아 보육사업, 출산장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 청소년 지원,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도시안전과·환경과·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제8조(도시환경국) ① -----
-- 주택상생과·자원순환과·도시계획과·건축지원과·맑은환경과·공원녹지과-----
-----.

② -----
-----.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생 략)

3. 건축행정, 건축허가·착공
· 준공검사, 건축신고, 건축
업자 지도감독, 위법건물 관
리 총괄, 건축물 영선, 건축
물관리대장 관리,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 옥외 광고
물 관리,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5.·6. (생 략)

제9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
국에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도로과·치수과
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도로·지하도·하천·구거

2.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생활폐
기물수집운반업자 지도감독,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
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

----- 도시디자인, 건축안전

<삭 제>

5.·6. (현행과 같음)

제9조(교통건설국) ① -----
--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
보행행정과·도로개선과·물관
리과-----

-.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등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 토지의 사용·수용, 보상, 전문건설업,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4.·5. (생략)

제10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12조(직제 및 업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지도감독,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마포중앙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17조(관할구역) 법 제4조의2제

----- 도
로의 사용·수용·보상, 전문
건설업, 가로정비, 옥외 광고
물 관리-----

4.·5. (현행과 같음)

제10조(설치) -----
----- 제126조-----

-----.

제12조(직제 및 업무) ① -----
- 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동
행과·의약과-----.

② -----

----- 안전관리, 출산장
려-----.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
- 도서관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관할구역) 법 제7조제1항

1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법 제7조제4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본청·보건소·사업소의 담당관·국·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본청·보건소·사업소의 담당관·국·과의 소관사무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만료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6조 중 “자치행정팀장”을 “동행정팀장”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19조제1항 중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제7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뉴미디어팀장”을 “미디어채널팀장”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4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4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총무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별표2의 “행정민원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5조의2제4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자원재활용팀장”을 “재활용관리팀장”으로 한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한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 교육지원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별표1의 자연재난분야 1, 2의 “치수과”를 “물관리과”로 하고, 3의 “도로과”를 “도로개선과”로, 4, 5의 “도시환경국”을 “행정지원국”으로, 6의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하고, 별표1의 사회재난분야 1의 “도로과”를 “도로개선과”로, 2의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7의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9의 “행정관리국”을 “재정관리국”으로,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10의 “기획재정국”을 “관광경제국”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11의 “행정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13의 “기획재정국”을 “관광경제국”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14의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나. 별표2의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복지정책과”를 “주민생활복지과”로,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

동행과”로,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누리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로, “도로과”를 “도로개선과”로, “치수과”를 “물관리과”로,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주택과”를 “주택상생과”로, “건설관리과”를 “보행행정과”로,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세무1과”를 “재산세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건축과”를 “건축지원과”로, “일자리지원과”를 “일자리청년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생활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정책과”로 “건강증진과”를 “건강동행과”로 “공보담당관”을 “홍보미디어과”로, “기획예산과”를 “새마포담당관”으로, “여성가족과”를 “가족행복지원과”로, “아동청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한다.

다. 별표4의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총무과”는 “행정지원과”로, “복지행정과”는 “주민생활복지과”로,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로,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누리과”로, “관광과”를 “관

광정책과”로, “토목과”를 “도로 개선과”로, “치수과”를 “물관리 과”로,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주택과”를 “주택상생과”로, “건설관리과”를 “보행행정과”로,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세무1과”를 “재산세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건축과”를 “건축지원과”로, “일자리지원과”를 “일자리청년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생활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정책과”로, “건강증진과”를 “건강동행과”로, “공보담당관”을 “홍보미디어과”로, “기획예산과”를 “새마포담당관”으로, “여성가족과”를 “가족행복지원과”로, “아동청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교육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재정관리국장,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제19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7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아동청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교육

지원과장 및 아동청년과장”을
“교육정책과장 및 아동청소년과
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하고, 제5
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
8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노인복
지팀장”을 “어르신정책팀장”으
로, 제12조제2항 중 “노인장애인
과장”을 “어르신동행과장”으로,
“노인복지팀장”을 “어르신정책팀
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
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
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
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

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4조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정책과”로, 제4조 중 “교육지원팀장”을 “교육정책팀장”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 중 “교육지

원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재정국장과 복지교육국장”을 “재정관리국장과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4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제9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한다.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

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하고, 제11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한다.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교육지원팀장”을 “교육정책팀장”으로 한다.

35.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5조제8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제13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아동청년과장”

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제8조 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한다.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여성가족과장, 교육지원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9조제4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약자와동행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팀장”을 “경제총괄팀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제7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을 “경제진흥과 경제총괄팀장”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

42.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4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관광일자리국장”

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4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관광일자리국장과 기획재정국장”을 “관광경제국장과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4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 또는 관광과장”을 “관광경제국장 또는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47.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제1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4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

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4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7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5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 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제7조제3항 중 “홍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

5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10조제4항제1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3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제10조제4항제4호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10조제5항 중 “도시안전과”를 “구민안전과”로 한다.

5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한다.

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도시안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제9조제3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여성가족과장”을 “어르신동행과장·장애인동행과장·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총무과 재난안전팀장”을 “구민안전과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58.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제5조제4항제1호 “기획예산과장, 도시안전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 보행행정과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59.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여성정책팀장”을 “양성평등정책팀장”으로 한다.

60.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문화예술과”를 “문화누리과”로 한다.

6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과”를 “새마포담당관”으로,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새마포담당관”으로, 제7조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6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제3조제2항제4호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5호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6호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6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복지행정과장”을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6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3호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4호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6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보행행정과장”으로, 제8조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제8조제5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보행행정과장”으로 한다.

66.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6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6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한다.

6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제7조 중 “운수관리팀장”을 “운수질서관리팀장”으로 한다.

70.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7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팀장”을 “식품행정팀장”으로, 제6조제3항제3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한다.

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조경팀장”을 “가로정원팀장”으로 한다.

7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생활체육과”을 “체육진흥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관리국 총무과 이동열
연 락 처	02-3153-8217